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63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윤한홍・박형수・엄태영

김민전 • 송석준 • 김종양

이종욱 · 강명구 · 권성동

박수민 · 강승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산총 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기업집단과 동일인에 게 공시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규제의 중요사항인 "동일인"의 정의는 부재하고 "기업집단"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영환경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

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제31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의2. "동일인"이란 둘 이상의 회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가.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 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자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 2)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 3)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자

- 4)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인사, 재무, 경영활동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0의3. "동일인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 1) 배우자
 - 2) 4촌 이내의 혈족
 - 3) 3촌 이내의 인척
 - 4)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 이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제10호의2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0호의3라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관계에 있는 자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 또는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1조제4항 중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동일인(자연인이 아닌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2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0호의2, 제10호의3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제

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0의2. "동일인"이란 둘 이상의</u>
	회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
	런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
	의 발행주식(「상법」 제3
	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
	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해당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u>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u>
	1)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
	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
	표이사를 임면한 자 또
	<u>는 임원의 100분의 50</u>

<u>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u> <u>할 수 있는 자</u>

- 2)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
 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
 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
 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
 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 3)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
 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
 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
 증이 있는 자
- 4)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인사, 재무, 경영활동 등
 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의3. "동일인관련자"란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1) 배우자

<신 설>

- 2) 4촌 이내의 혈족
- 3) 3촌 이내의 인척
- 4)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

 생자의 생부나 생모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 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 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 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제10호의2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 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 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 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 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12. ~ 20. (생략) 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 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 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 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동일 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 10호의3라목에도 불구하고 동 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 관계 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 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 또 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경영 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 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 다.
- 12. ~ 20. (현행과 같음)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동일인(자연인이 아닌 경우

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 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3. ~ 7. (생략)
-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신 설>

<u>에 한정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5조(벌칙)
 1 /원체기 가ბ)
1. (현행과 같음) <삭 제>
<u> </u>
3. ~ 7. (현행과 같음)
제126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u>자</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